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제정 2023. 06. 12

개정 2025. 02. 13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2 및 제33조의 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②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이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는 통상 카메라, LAN선, NVR, 모니터로 구성

- ③ 영상정보 :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
- ④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⑤ 정보주체 :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⑥ 정보처리 :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 ⑦ 보호자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1. CCTV 미설치·미관리 동의, 침실 촬영 동의 또는 열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중 급여계약 통보서상의 계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부재이거나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법정 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 친족 순으로 한다.
- ⑧ 모니터링 :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 단 종사자의 노동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임

제3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시설 내 수급자 및 종사자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해서는 법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집 목적 및 의견 수렴) 본 지침은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한다.

- ① 영상정보 수집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 ② 제①항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CCTV 설치장소, 촬영범위 등의 적절성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③ 입소자 및 시설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 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5조 (책임자 지정) 본 시설은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① 관리책임자 : 원장
- ② 운영담당자 : 사무국장, 복지행정팀장
- ③ 모니터링 담당자 : 사무국장, 복지행정팀장, 건강지원팀장(사고발생 시 정확한 판독을 위해 각 팀에 1명씩 지정함),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야간 근무 시)
- ④ 관리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를 겸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담당자가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⑤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은 시설에서 보관한다.

제6조 (CCTV 설치)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의 CCTV 설치는 총 69대이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 ① 수급자 개인공간(침실방) : 생활실 희망이네 7대, 소망이네 5대, 사랑이네 6대, 평화네 7대, 믿음이네 7대 설치하며 운영자는 침실촬영에 관하여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연1회 침실 촬영동의 여부를 작성토록 한다.
- ② 수급자 공용공간(거실, 생활실내 복도) : 생활실 희망이네 5대, 소망이네 2대, 사랑이네 2대, 평화네 2대, 믿음이네 2대 설치한다
- ③ 기타공간 : 각층로비 6대, 물리치료실 1대, 특별침실 1대, 프로그램실(1층) 1대, 프로그램실 복도 1대, 면회실 2대, 조리실 주방 1대, 조리실 식사 공간 1대, 승강기 1대, 주차장 2대, 옥상 2대, 산책로 4대, 분리수거장 1대 설치한다
- ④ 설치·운영되는 CCTV의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출입구 및

게시판에 설치한다.

- ⑤ CCTV 운영모니터, 디지털 녹화기, 그밖의 부대장치 장비는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본 지침은 별지 제 13호 서식에 따라 설치된 CCTV의 정보주체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 ① 설치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CCTV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한다.
- ② 안내판은 시설 출입구, 주변 경계부(담장)등에 설치한다.

제8조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시설에 설치된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 ①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 ②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침실 등 수급자의 주 생활 장소는 동작 감지기능 설정·녹화 불가)
- ③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하여 운영
- ④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 초당 10프레임
- ⑤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에 있는 DVR
- ⑥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 ⑦ 영상정보의 삭제주기 :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며 90일이 초과하기 전에 삭제한다.

제9조 (CCTV 사용 제한) 시설에 지정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②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 ③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④ 영상정보를 무단복제, 저장, 전송하는 행위

제10조 (영상정보의 열람 가능 사유)

-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목적
 1. 입소자가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사고발생 여부(낙상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② 입소자나 보호자의 재산 또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확인
- ③ 수사를 위해 경찰, 검찰등의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④ 노인학대, 시설 운영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 요청하는 경우

제11조 (영상정보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등)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 및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다음과 같은 정당한 열람 절차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열람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한다.
-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등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열람 요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로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한다.
단,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열람요청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즉시 열람하도록 한다.
- ③ 열람은 결정통지서 회신일로부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열람 시에는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토록 한다
- ④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조사, 안전사고 확인, 그밖에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관계공무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신분증 및 공문서를 확인함으로써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종사자의 신분증 및 기관장 명의의 공문 또는 업무수행 증빙서류를 확인함으로써 열람 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즉시 열람을 허용한다.
단, 이 경우 영상정보의 무단복제,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기록을 남기고 열람 사유 및 열람 범위를 최소화하여 관리한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 통지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보관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의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 (영상정보 처리 제한) 본 시설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④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한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⑥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 (장비관리)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유지의무) 본 규정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화상정보를 열람한 입소자나 보호자는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7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운영위원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 연락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서

	성명		전화번호	
신고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20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 수급자 수: 명 • 보호자 수: 명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 받았기에 붙임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p>				

[별지 제 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 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 수급자 수: 명 • 보호자 수: 명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p>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장소]

- ☒ 침실 ☒ 공동거실(복도포함) ☒ 현관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 엘리베이터 ☐ 기타(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 보호자 대상]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종사자 대상]

성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종사자) 연락처: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원장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처리기한

10일 이내

요청서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청구인</div>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정보주체 인적사항</div>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청구내용</div>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 월, 일, 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원장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 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원장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 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p>「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원장 귀하</p>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 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p>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원장 귀하</p>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 열람 · 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3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작성요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23. . . ~ '23. . . 까지

번호	점검일자	성능 및 촬영기간 삭제주기	안내판 설치 장소	영상정보저장장치		모니터 관리		담당자 명		조치사항 등
				정상 작동여부	잠금장치	화면 외부 유출 유·무	잠금장치	성명	서명	
1	'23.6.29	60일 정상	확인 √	확인 √	확인 √	무	확인 √			
2										
3										
4										
5										
6										
7										
8										
9										
10										
11										
12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책 임 자	책임자 : _____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2- 운영자 : _____ 사무국장 [연락처] 위탁업체 : 업체명 [연락처]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원장 귀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원장 귀하

8.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 지침

제정 2025. 02. 13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요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요양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외주업체 등)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 ①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② 안전보건관리자 : 안전보건 관리 전담자

제4조 (책임과 역할)

- ① 원장 : 중대재해 예방 총괄,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감독
- ② 안전보건 관리자 : 위험성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안전교육 실시, 사고 보고 및 조사 주관
- ③ 부서별 담당자 : 정기회의 개최, 재해예방 대책 심의, 근로자 의견수렴, 부서내 안전관리, 위험요인 발견 시 보고 및 개선조치 실시
- ④ 근로자 : 안전수칙 준수, 위험상황 발견 시 즉시 보고

제5조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1. 매년 1회이상 전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2.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
- ②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1.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정기점검 실시
 2. 보행로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환경 유지
- ③ 교육 및 훈련
 1. 전 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신규 입사자 및 파견직 대상 별도 안전교육
 3.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훈련 정기적 실시

제6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단계	내용	비고
상황발생	◦ 안전사고 또는 비상 상황 발생	현장보존
상황확인	◦ (담당자) 1차 조치(위급 상황 조치)와 함께, 중간관리자 에게 즉시 보고 ◦ 즉시 조치 가능한 경우, 상황 조치 ◦ 즉시 조치 어려운 경우, 주변인에게 사고 발생을 전파하고 응급 처치 실시, 119 구급대 신고 ◦ (필요시) 시설안전관리인 협력 요청해서 상황 조치	1차 위급상황 조치가 우선임
상황보고	◦ (담당자) 상황 발생 후,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관리자, 기관장 등에게 빠른 시간 내에 보고 ◦ (중간관리자) 상황에 따라 협력기관(안전관리유지보수업체, 경찰서, 보험사 등)에 연락 중대 상황 시, 기관장 에게 보고, 법인과 구청에 업무연락 ◦ (<u>시설안전관리인</u>) 안전조치 지원, CCTV 증거 화면 확보 등	
상황조치	◦ 상황별 조치 & 후속조치 계획 ◦ 상황에 대한 결과보고(구두 & 서면)	
결과보고	◦ (담당자) 최종 결과보고 (담당자-중간관리자-기관장) ◦ (중간관리자)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중대상황일 경우에는 구청, 법인에 업무연락 ◦ (기관장) 결과에 대한 검토 & 승인	

제7조 (작업중지 절차)

- ① 중대재해 발생 인지 및 즉각대응
 1. 재해 발생 시 즉시 현장 내 모든 작업을 중단한다.
 2. 환자 및 직원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을 신속히 통제한다.
- ② 작업중지 및 상황보고
 1. 작업중지 상황을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2.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필요한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
- ③ 환자 및 직원 대피 /안전 확보
 1. 위험이 있는 구역에서 환자 및 직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2.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④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1.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기록한다.
 2.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 ⑤ 작업 재개 통보 및 이행
 1. 작업 재개 승인 시 작업자 및 직원에게 알리고 정상 업무를 재개한다.

제8조 (비상대피 계획 확립을 위한 준비사항)

- ① 경보 발령절차 : 최초발견자-> 비상연락망으로 연락->기관 내 경보발령
- ② 비상통로 및 비상구의 명확한 표시 : 기관 내 비상통로, 비상구, 대피장소 등을 도면에 첨

부하여 명확히 표시

③ 직원 및 입소자 등의 대피절차 및 대피장소의 결정

1. 화재·폭발 : 불길 속 통과 시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2. 토사·구축물 등 붕괴 : 비상통로를 통해 신속히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3. 지진 :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이므로,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지진 발생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된다.
4. 독성물질 누출 : 독성물질 노출을 피해 신속히 대피 장소로 이동

제9조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① 현장 출입 통제 및 근로자 전원에게 공유하고 작업중지 조치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
- ②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
- ③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 등에 해당 사항을 공유하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제10조 (기록 및 문서관리)

- ① 사고보고서, 위험성 평가서, 교육이수 기록 등 문서 3년 이상 보관
- ② 안전보건관리 비용 집행 내역 기록 및 관리

제11조 (법령 준수 및 개선)

- ①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
- ② 법령 및 시설 변화에 따른 지침 정기 검토 및 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운영위원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